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조항 마련 등〉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62호)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41호)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50호)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44호)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64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6
1) 위법한 명령 불복종 근거 마련	6
2) 명령 발령자의 의무	14
3) 헌법 및 군법 준수의무 및 교육 실시	17

I . 제안경위

1. 민형배의원안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7.

3. 회부연월일 : 2025. 2. 10.

2. 김재원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26.

다. 회부연월일 : 2025. 2. 27.

3. 안규백의원안

가. 발 의 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4. 11.

다. 회부연월일 : 2025. 4. 14.

4. 이병진의원안

가. 발 의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5. 9.

다. 회부연월일 : 2024. 5. 12.

5. 백선회의원안

가. 발 의 자 : 백선회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5. 21.

다. 회부연월일 : 2025. 5.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민형배의원안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하달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항명죄로 처벌합니다. 이 규정들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위헌·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5조).

2. 김재원의원안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권 등을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3. 안규백의원안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됨에 따라, 선출된 문민 권력에 반하는 군부 쿠데타뿐만 아니라, 선출된 문민 권력의 위헌적 명령에 의해 군이 동원되는 친위 쿠데타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명자의 명령 복종의 의무와 발령자의 법규에 반하는 명령 금지에 관한 의무만 있는 반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헌법 의식 내면화를 도모하고 위헌·위법적 명령을 구분할 분별력을 함양하며,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4. 이병진의원안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전쟁법에 대한 교육(제34조) 및 기본권 교육(제38조제1항)과 성인지교육(제38조제2항)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계엄 관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군 임무수행이 불법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란이나 군사반란의 방지에도 이어져 헌정질서의 수호와도 연관되는 것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임.

이에 군인 대상으로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정질서의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5. 백선회의원안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형법」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인이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서 위헌·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헌·위법적 명령인 경우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24조, 제25조).

Ⅲ. 검토의견

1. 위법한 명령 불복종 근거 마련(안 제25조)

□ 개정안은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해 복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민형배의원안	안규백의원안	백선희의원안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 ----- ----- ----- ----- <u>다만,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경우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u>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명령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 ----- ----- ----- ----- <u>다만, 상관의 명령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헌적 명령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군인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관의 위헌적 명령을 거부한 경우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u>2. 본연의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권한 범위 밖의 사항인 것이 명백한 경우</u> <u>③ 군인이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 발령자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하나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 <u>1. 명령 발령자의 상관</u> <u>2.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군인권보호관</u> <u>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u> <u>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u>④ 군인이 제3항에 따라 명령복종 거부 의사</u>	<u>③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u> <u>④ 군인은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u>
--	--	--	--

		<u>를 통보한 경우</u> <u>에는 「군형</u> <u>법」 제44조,</u> <u>제45조 및 명령</u> <u>의 불복종과 관</u> <u>련한 불이익한</u> <u>처분을 감경 또</u> <u>는 면제하여야</u> <u>한다. 다만, 명</u> <u>령이 제2항 각</u> <u>호에 해당하지</u> <u>아니하는 것으</u> <u>로 드러난 경우</u> <u>에는 그러하지</u> <u>아니한다.</u>	<u>이익을 제기한</u> <u>이유로 인사상</u> <u>불이익한 처우</u> <u>를 받지 아니한</u> <u>다.</u>
--	--	---	--

□ 현행법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¹⁾하고 있으나, 명령이 위헌·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 위법성 또는 정당성을 판단하여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특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군 동원, 국회의원 체포 시도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위헌·위법적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2024헌나8) 중 일부 발췌·정리

2024.12.3.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는 헌법 제44조 제1항, 계엄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으며, 헌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포고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다.

□ 이미 현행법에서는 상관이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²⁾하고 있고, 「군형법」에서도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 시 처벌하도록 규정³⁾하는 바, 명령 복종의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법률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 특성상 위법한 명령⁵⁾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상관의 책무)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4) 대법원도 항명죄에서의 ‘정당한 명령이란 적법한 명령임을 전제’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5)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임 (2024헌나8)

규정하고, 명령 복종 거부 의사에 대해 「군형법」상 항명죄⁶⁾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등의 취지임.

이는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병이 상관의 명령과 법적 정당성 사이에서 판단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고, 군의 윤리성과 책임 있는 명령 체계 확립을 위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위법·부당한 명령인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명자가 자의적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적법한 명령조차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둘째,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이 있는 경찰, 검찰, 국정원 등과 다르게 전시·사변 등 특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군 임무의 특성상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을 전제하여 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중요한데, 수명자가 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군의 지휘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직무수행) 제6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참고로, 독일의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⁷⁾을 참조하여 책임 면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독일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1) 군인은 반드시 자신의 상관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상관의 명령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완전하고도 양심적으로, 그리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직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내려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다.** 착오로 그러한 명령이라고 간주한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착오가 불가피했고 정황에 의거할 때 그가 법적구제를 통해서 항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책임이 면제된다.
- (2) **범죄가 될 수 있는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복종한 해당 부하는 명령의 복종이 범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그가 알고 있는 정황에 의거할 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명백했던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된다.

□ 결론적으로,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대한 여러 개정안과 타 공무원 관련 법규정, 독일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직무상 명령 거부시 무조건적으로 인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보다는, 해당 명령이 정당하고 적법한 명령이었을 경우 정황상 착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경감하는 등의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7) 아래의 표 참조. 출처: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Soldaten), 국회도서관, 2012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타국의 유사한 법령 및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2. 명령 발령자의 의무(안 제24조제1항 신설)

- 백선회의원안 제24조는 군인이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 등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되고, 위헌적 명령이 하달된 경우 수명자가 지체 없이 이의제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임(안 제24조 제1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신 설>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계엄법」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하거나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 등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위헌적 명령이 하달된 경우 수명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 ④ (생략)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백선회의원안 제24조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로 이루어진 군의 명령 구조 내에서 헌법 수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최근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계엄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국회 침입 및 정치인 체포 등의 위법·부당한 명령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24조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법규에 반하는 사항에 대한 명령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6조(상관의 책무)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6조(상관의 책무)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계엄법」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하거나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 등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이미 현행 규정으로 충분히 규율된다고 보이므로 중복 입법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백선희의원안 제24조제1항 후단(위헌적 명령이 하달된 경우 의무적 이의제기 규정)의 경우, 백선희의원안 제25조제3항⁸⁾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해당 내용은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보다는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에 규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므로, 중복 입법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현행법에서 명령 발령자와 상관은 직무와 관계된 적법한 명령만을 발하도록 기 규정하고 있기에 동 조항 신설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백선회의원안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③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헌법 및 군법 준수 의무 및 교육 실시(안 제20조의2 신설 등)

□ 개정안들은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헌법 및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백선희의원안은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 및 헌법 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고,

김재원의원안은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며,

이병진의원안은 기본권·성인지교육을 규정한 제38조에 군법교육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제 34조의2 신설, 제38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백선희의원안
<신설>	제20조의2(헌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작전 등 임무를 수행할 때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

현행	백선희의원안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2항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속 군인의 이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현행	김재원의원안
<신설>	제34조의2(국방 관계 법령 교육의 의무)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성급 및 영관급 장교에 대하여는 연 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 관계 법령 교육에 대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소속 군인의 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소속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행	이병진의원안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교육(이하 “군법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u>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u>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 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u>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u>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 ----- ----- <u>기본권교육, 성인지교육 등</u> 및 <u>군법교육</u> -----. ----- ----- ----- <u>기본권교육, 성인지교육 등</u> 및 <u>군법교육</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u>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u> 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 -- <u>기본권교육, 성인지교육 등</u> 및 <u>군법교육</u> ----- -----. ----- ----- -----.

현행	이병진의원안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u>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u>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 <u>기본권교육, 성인지교육등 및 군법교육</u> 의 -----.
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u>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u> 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 <u>기본권교육, 성인지교육등 및 군법교육</u>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u>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u> 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제7항까지 외에 <u>기본권교육, 성인지교육등 및 군법교육</u> ----- -.

☐ 현행법에는 군인이 임무 수행 시 헌법을 준수할 의무나,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 전술했던 바와 같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군 동원, 국회의원 체포 시도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위헌·위법적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결정(2024헌나8) 중 일부 발췌·정리
2024.12.3.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는 헌법 제44조 제1항, 계엄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으며, 헌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포고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다.

□ 이와 같이,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의 법령 이해도는 작전 수행의 적법성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헌법」 및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백선희의원안 제20조의2제1항(임무 수행 시 헌법 준수)와 관련하여, 군인은 현행법령상 이미 임무 수행 시 헌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님.

군인은 공무원에 해당하며⁹⁾, 「국가공무원법」¹⁰⁾에서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¹¹⁾에서도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는 이미 명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9)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10)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에 대한 입
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백선희의원안 제20조의2제1항의 헌법준수 의무규정에
대해 군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
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교육 내용과 관련한 개정안들의 경우
이미 현행법에서 전쟁법 교육(제34조12)), 다문화 교육(제37조13)),
기본권 및 성인지교육(제38조14)) 등 군인이 숙지해야 하는 여러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
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7조(다문화 존중)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야 한다.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
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
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
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
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2. 이 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마련
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을 이미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각 군은 이미 자체 규정을 통해 군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각군별 군법교육 실시 근거 규정]

육 군	해 군	공 군
육규 170 법무 규정 제10조(교육의 종류와 책무) ① 군법교육은 정기 군법교육과 특별 군법교육으로 구분된다. 군법교육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을 내용으로 하되,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 대상자의 신분, 임무, 계급별 특성에 따라 교육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② 지휘관은 소속 장병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군법교육을 해야 한다. 장병은 연 1회 이상 군법교육을 받아야 하고, 지휘관은 소속 장병의 군법교육 수강에 대한 책임이 있다.	10 - 0 - 1 - 규01 해군 법무 규정 제7조(교육의 종류 및 책임) ① 군법교육은 정기 군법교육과 특별 군법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 군법교육은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여 연 2회(반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시 책임은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있다.	공군규정 10-1 법무관리규정 제70조(군법교육의 실시) 법무실장은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군사관계 제법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준법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군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군법교육을 실시한다.

자료: 국방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김재원의원안은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장성급 및 영관급 장교에 대해서는 연 5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 시간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 파견, 전시·사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수 곤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수 여부가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시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수 시간 등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안 제34조의2제2항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교육 이수 여부를 진급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서 진급요건으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예컨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¹⁵⁾에서는 인사관리 등에 대한 반영 여부를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현행법 제34조¹⁶⁾, 제38조¹⁷⁾에서 전쟁법 및 기본권·성인지 교육의 구체적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① 국방부장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안에서도 유사한 위임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추가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교육 계획 수립, 이수 현황 점검 및 진급 반영 등의 행정 절차를 새로이 수행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인력 확보와 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부대비용 산정 및 행정 소요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들은 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교육과 관련한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제20조의2, 제34조의2, 제38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백선희의원안은 헌법 준수의 의무 등을 제20조(충성의 의무)¹⁸⁾ 다음 조문인 제20조의2에 신설하고자 하고,

김재원의원안은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다음 조문인 제34조의2에 국방 관련 교육의 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며,

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병진의원안은 법 제38조(기본권 및 성인지교육)에 군 관련 법령의 교육 내용을 추가하려고 함.

- 법 체계의 전체적인 정합성 및 조문 간 기능 분담의 명확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를 개정하여 헌법, 국방 관련 법률 및 전쟁법 준수의 의무로 개정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임. 따라서 이를 종합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현행	수정의견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u>헌법 및 국방 관련 법률 준수</u> 의 의무) ① 군인은 「 <u>대한민국헌법</u>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국방 관련 법령</u> 및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u>이하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이라 한다</u>)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u>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u> 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u>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u>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방부는 군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헌법 및 국방 관련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헌법

의식을 내면화하여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참고로, 동 개정안들과 유사한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6건의 「군
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들¹⁹⁾이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함께 병합 심
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10

19)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91호),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07호), 홍
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54호),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84호),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47호),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57호)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5.02.19) 참조